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83
----------	-------

발의연월일 : 2026. 03. 26.

발 의 자 : 이용우 · 안호영 · 김남근
이기현 · 김태선 · 박찬대
김현정 · 손 솔 · 임미애
김남희 · 한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상 보호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현행 제도상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세대원 특성 기준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냉·난방 취약가구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염·한파와 같은 일상적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정책이 한시적

조치나 재정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①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정 범위의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다.

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 시 전력 취약가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소요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면 범위, 감면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u> <u>의 감면) ① 기상청의 폭염·</u> <u>한파 특보 또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기후재난이 발생한 경</u> <u>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u> <u>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정 범위</u> <u>의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u> <u>있다.</u> <u>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u> <u>로 한다.</u>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 령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 시 전력 취약가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소요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면 범위, 감면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령으로 정한다.